

제251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섬길 보존과
관광 자원화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1월 13일

여수시장 



여수시 조례 제2249호

붙임 여수시 섬길 보존과 관광 자원화 지원 조례 1부

여수시 섬길 보존과 관광 자원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섬길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이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관광 자원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섬길”이란 여수시 섬 지역에 조성된 도보길, 탐방로, 순례길, 역사·문화·생태길 등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길을 말한다.
2. “섬길 관광 자원화”란 섬길의 역사·문화·생태적 가치를 보존하면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홍보,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 원칙) ① 섬길의 보존 및 관광 자원화는 역사·문화·생태적 가치를 유지하면서 지속 가능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② 섬길의 관광 자원화 및 운영 과정에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섬길의 관광 자원화와 운영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련 부서 간 협업과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섬길의 관광 자원화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섬길별 보존 및 관리 방안

2. 섬길별 특화 전략 및 관광자원화 계획
3. 주민 참여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4. 관련 기관 및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예산 확보 및 지원 방안

제5조(섬 자원 아카이빙 및 연구) ① 여수시는 섬길의 역사·문화·생태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섬 자원 아카이빙” 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섬길의 관광 자원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섬길 보존 및 관광 자원화 차별화 전략 연구 등에 관한 사업
2. 섬길 관련 교육 및 컨설팅 등에 관한 사업
3. 섬길 차별화 전략 실행 및 마케팅·홍보 등에 관한 사업
4. 섬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대·내외 협력 사업
5. 그 밖에 섬길 관광 자원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섬길의 관광 자원화 지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여수시 섬길 관광 자원화 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은 「여수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여수시 관광진흥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섬길 보존 및 관광 자원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전문기관, 단체 및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